도, 시군공무원 설명자료

2007년도

여성농업인정책 주요사업

2007. 1.

농 림 부
여 성 정 책 과

"미래이끌 생명산업! 꿈이있는 푸른농촌!"

목 차

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Ⅱ.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Ⅲ.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

Ⅳ.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Ⅴ. 기타 협조사항 ·····

< Q&A > 양육비 및 일손돕기 지원 ·····

< Q&A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I.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행정사무관 이성주 02-500-1605, 주무관 노승환 01-500-1606))입니다.

- 2007 달라진 내용 -

구분	2006년	2007년	변경사유
지원대상	○ 만5세 이하 아동	○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포함	○ 취학유예 아동 지원 필요
지원지역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결혼이민자 특례	○ 규정없음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 국적 취득전의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필요
지원제외	○ 타부처 지원대상자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에 포함	○ 이중 수혜 방지
지원금액	○ 보육시설 이용아 - 79 ~ 175천원 ○ 유치원 취원아 - 국공립 28~56천원 - 사립 79~158천원	○ 보육시설 이용아 - 113 ~ 253천원 ○ 유치원 취원아 - 국공립 39~56천원 - 사립 113~162천원	○ 지원단가 인상 -정부보육료 단가의 50%(5세아는 100%)→ 70%(5세아는 100%) ○ '07년 정부보육료 단가 인상분 반영

1. 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량(천명)		27	30	33	32
사업비	계	29,204	38,308	44,484	53,564
	국 비	14,602	19,154	22,242	26,782
	지방비	14,602	19,154	22,242	26,782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참조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 보육시설 등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로써 동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시설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2)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하여 중복지원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다만, 타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05년 신설)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집행가능 비용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수업료 및 급식비
1세	´05.3.1 ~ ´06.2.28	222,000	
2세	´04.3.1 ~ ´05.2.28	183,000	
3세	´03.3.1 ~ ´04.2.28	126,000	
4세	´02.3.1 ~ ´03.2.28	113,000	
5세	´01.3.1 ~ ´02.2.28	162,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 참고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수업료 및 급식비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 만5세 이상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천명)	사업비					
		합 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30	53,564	26,782	26,782	-	26,782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절차

① 농업인 등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시·군·구로부터 통보되면 이를 농업인(신청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지

④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협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매년 12월 20일까지)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실적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근거로 농업인 등(신청인)에게 지원금 계좌입금

⑤ 보육시설 등

- 읍·면·동으로부터 농업인(신청인) 자녀의 시설이용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 지원대상 아동의 월별 보육실적 등을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시·군·구에 제출되도록 조치

※ 연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1분기(전년 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전년 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전년 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배정

(2) 사업비 집행

○ 본 지침에 의해 변경된 월지급한도액은 '07.3.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07년 1, 2월분은 전년도 지침상의 연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07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조견표>

연령별	연령기준 (출생일)	시설별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2월분	3-12월분	1,2월분	3-12월분	1,2월분	3-12월분
0세	'06.3.1이후 출생	175,000	253,000				
1세	'05.3.1~'06.2.28	175,000	222,000				
2세	'04.3.1~'05.2.28	154,000	183,000				
3세	'03.3.1~'04.2.28	127,000	126,000	-	39,000	-	126,000
4세	'02.3.1~'03.2.28	79,000	113,000	28,000	39,000	79,000	113,000
5세	'01.3.1~'02.2.28	79,000	162,000	28,000	56,000	79,000	162,000
6세	'00.3.1~'01.2.28	158,000	162,000	56,000	56,000	158,000	162,000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는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 없음

※ 농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보육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계좌에 연령별 보육료 등 지원금을 익월 10일까지 입금

- 시설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육)실적통지서상의 보육료(교육비) 수납액과 보육인정기간을 확인하여 15일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의 1/2만 지급

  ・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공휴일은 보육일수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방학 중이라도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 15일 이상 보육실적이 인정되더라도 보육료(교육비)를 지원금보다 적게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액 만큼만 지급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보육실적 제출이 늦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타부처(여가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타부처의 지원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

  ・ 여가부・교육부의 당해연도 저소득층 지원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하여 중복지원 여부 재점검

- 매년 12월 지급분은 해당 보육시설 등과 협조하여 보육실적 등을 제출받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되도록 일정을 조정 시행(회계연도 이월 집행은 불가)

(3)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조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농업인에 대한 보육료 등 지원을 중단

(4) 양육비 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보육시설 등 운영자 :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5)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2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31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4호 서식)은 익분기 2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5호 서식)는 익년도 2.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12-59-596,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반납금)

마. 사업시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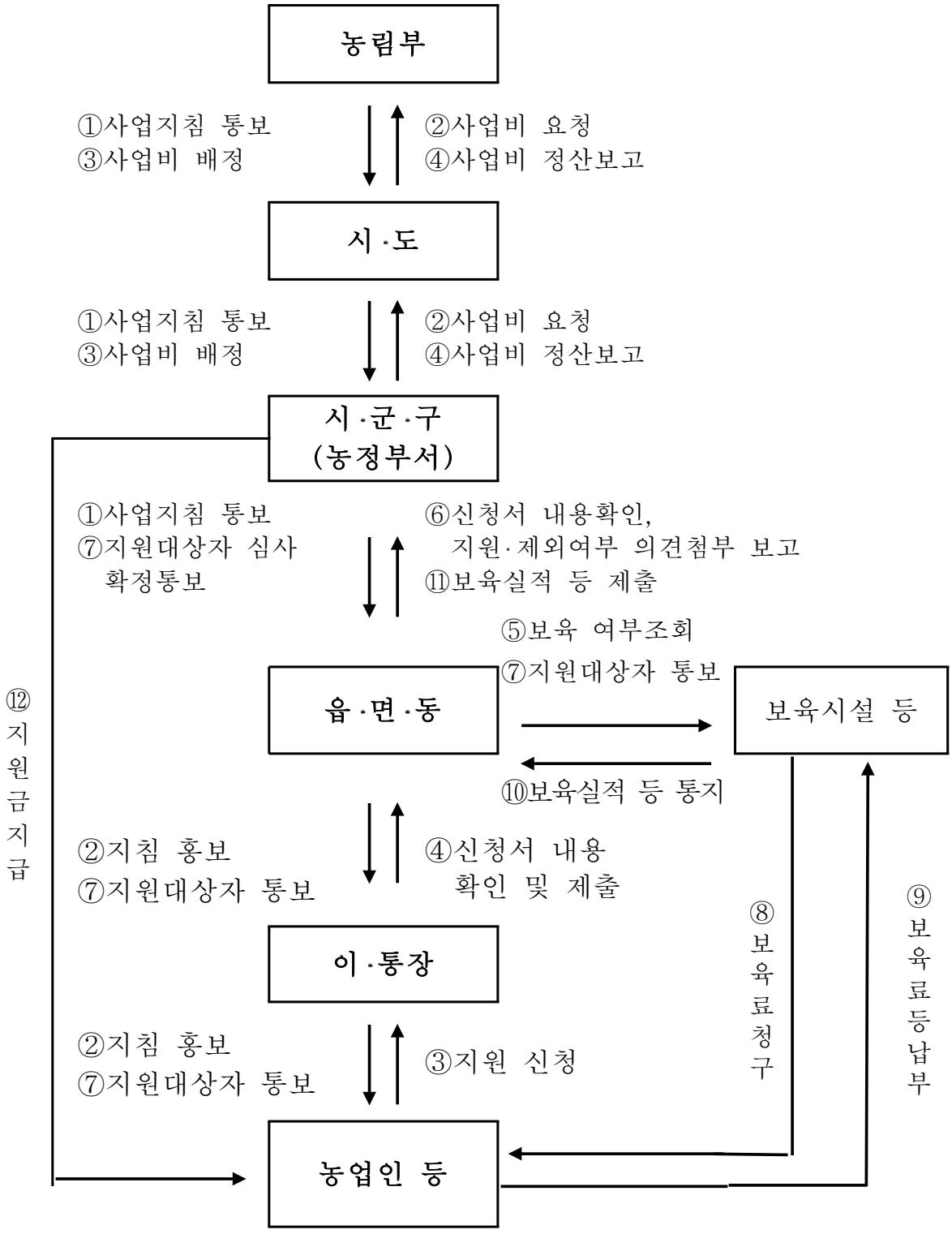
농림부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도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군·구
(농정부서)
①사업지침 통보
⑦지원대상자 심사
확정통보
⑥신청서 내용확인,
지원·제외여부 의견첨부 보고
⑪보육실적 등 제출
⑤보육 여부조회
⑦지원대상자 통보
읍·면·동
보육시설 등
⑩보육실적 등 통지
②지침 홍보
⑦지원대상자 통보
④신청서 내용
확인 및 제출
이·통장
②지침 홍보
⑦지원대상자 통보
③지원 신청
⑫
지
원
금
지
급
⑧
보
육
료
청
구
⑨
보
육
료
등
납
부
농업인 등

< 별표 >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 해 가 구 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 농 업 농 촌 기 본 법 시 행 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 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 임 업 및 산 촌 진흥촉진에관한 법 률 시 행 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 유 규 모 1,000,000㎡미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 구분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신청자 기재사항 (농어가 단위)	농지소유 면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 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소·말·젖소·사슴 : 마리, 돼지·개 : 마리, 산양·면양 : 마리, 토끼·친칠라·밍크 : 마리, 가금 : 마리, 양봉 : 군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M/T,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ha, 살포·투석 ha,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이 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규모)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M/T이하) 척, 양식장 ha		

[별지 제2호 서식]

200 년 월분 보육(교육)실적 통지서

(시설명 :)

일련번호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보육료(교육비) 수납액	15일이상 보육·교육 실적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위와 같이 보육(교육) 실적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보육·교육시설의 장) (직인)

읍·면·동장 귀하

※ 보육・교육실적란에는 15일이상이면 “이상”, 15일미만이면 “미만”으로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영유아 양육비 국비보조 신청서(/4분기)

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보육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소계									
교육비	3세									
	4세									
	5세									
	6세									
	소계									
합 계										

주) 1.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집행실적(　분기)

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액			당분기 집행액			누계		
			아동수	집행액	국비	아동수	집행액	국비	아동수	집행액	국비
보육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소계										
교육비	3세										
	4세										
	5세	입학금									
		수업료									
		소계									
	6세	입학금									
		수업료									
		소계									
	소계										
합 계											

주) 1. 집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기재
2. 5세아 이상의 교육비의 항목에서 동인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시에 지급한 경우, 인원 및 금액을 각각 별도 계상
3. 아동수는 연인원(1인에 대하여 12개월 지원하였을 경우 12명)을 기재
4.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철저 : 집행액 ÷ 아동수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정산결과 보고서

시·도별 : (단위 : 명, 원)

구 분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아동수	금액	아동수	금액	아동수	금액
0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1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2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3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4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5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6세	국비	-		-		-	
	지방비	-		-		-	
	소계						
합계	국비	-		-		-	
	지방비	-		-		-	
	합계						

주) 1. 아동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3. 집행(정산)액은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II.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행정사무관 이성주 02-500-1605, 주무관 노승환 02-500-1606))입니다.

- 2007 달라진 내용 -

구분	2006년	2007년	변경사유
지원대상	○ 만5세 이하 아동	○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포함	○ 취학유예 아동 지원 필요
지원지역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결혼이민자 특례	○ 규정없음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 국적 취득전의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필요
지원제외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에 포함	○ 이중 수혜 방지
지원금액	○ 39.5~87.5천원/월	○ 57~126천원/월	○ 지원단가 인상 -정부보육료 단가의 25%(5세아 50%) → 35%(5세아는 50%) ○ '07년 정부보육료 단가 인상분 반영

1. 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체 농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줄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사업량(천명)		28	46
사업비	계	28,240	47,922
	국 비	14,120	23,961
	지방비	14,120	23,961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둔 경우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참조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 보육시설 등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로써 동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시설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2) 지원제외 대상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연령별 월 지급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고
0세	´06.3.1 이후 출생	126,000	
1세	´05.3.1 ~ ´06.2.28	111,000	
2세	´04.3.1 ~ ´05.2.28	92,000	
3세	´03.3.1 ~ ´04.2.28	63,000	
4세	´02.3.1 ~ ´03.2.28	57,000	
5세	´01.3.1 ~ ´02.2.28	81,000	
6세	´00.3.1 ~ ´01.2.28	81,000	

○ 지원수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단, 만5세 이상 아동은 50%)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천명)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46	47,922	23,961	23,961	-	23,961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절차

① 농업인 등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등 여부,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등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설이용 아동 제외) 등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④ 시장·군수·구청장

○ 읍·면·동의 지원대상자 선정 적합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

※ 연중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 신청

- 1분기(전년 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전년 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1분기(전년 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2) 사업비 배정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15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1분기(1.15), 2분기(4.15), 3분기(7.15), 4분기(10.15)

○ 시·도 : 각 시·군·구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0일까지 시·도비 부담분을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

- 1분기(1.20), 2분기(4.20), 3분기(7.20), 4분기(10.20)

○ 시·군·구 : 각 읍·면·동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5일까지 시·군·구비 부담분을 합하여 읍·면·동에 교부

- 1분기(1.25), 2분기(4.25), 3분기(7.25), 4분기(10.25)

(3)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지침상의 연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매월 말일까지 여성농업인 등(신청자)에게 계좌입금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는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 없음

※ 농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사업시행 연도중 농어촌지역으로의 전입 등으로 신규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익월분부터 지원금을 지급

- 사업시행 연도중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 사업시행 연도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지연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을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시점까지 소급지급

※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월분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까지 소급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까지 소급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당해 월부터 지원을 중단

※ 여성부·교육부의 당해연도 지원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하여 중복지원 여부 재점검

(4)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조치

○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지원을 중단

(5) 일손돕기 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6)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읍・면・동장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1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2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20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31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은 익분기 2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4호 서식)는 익년도 2.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12-59-596, 20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반납금)

마. 사업시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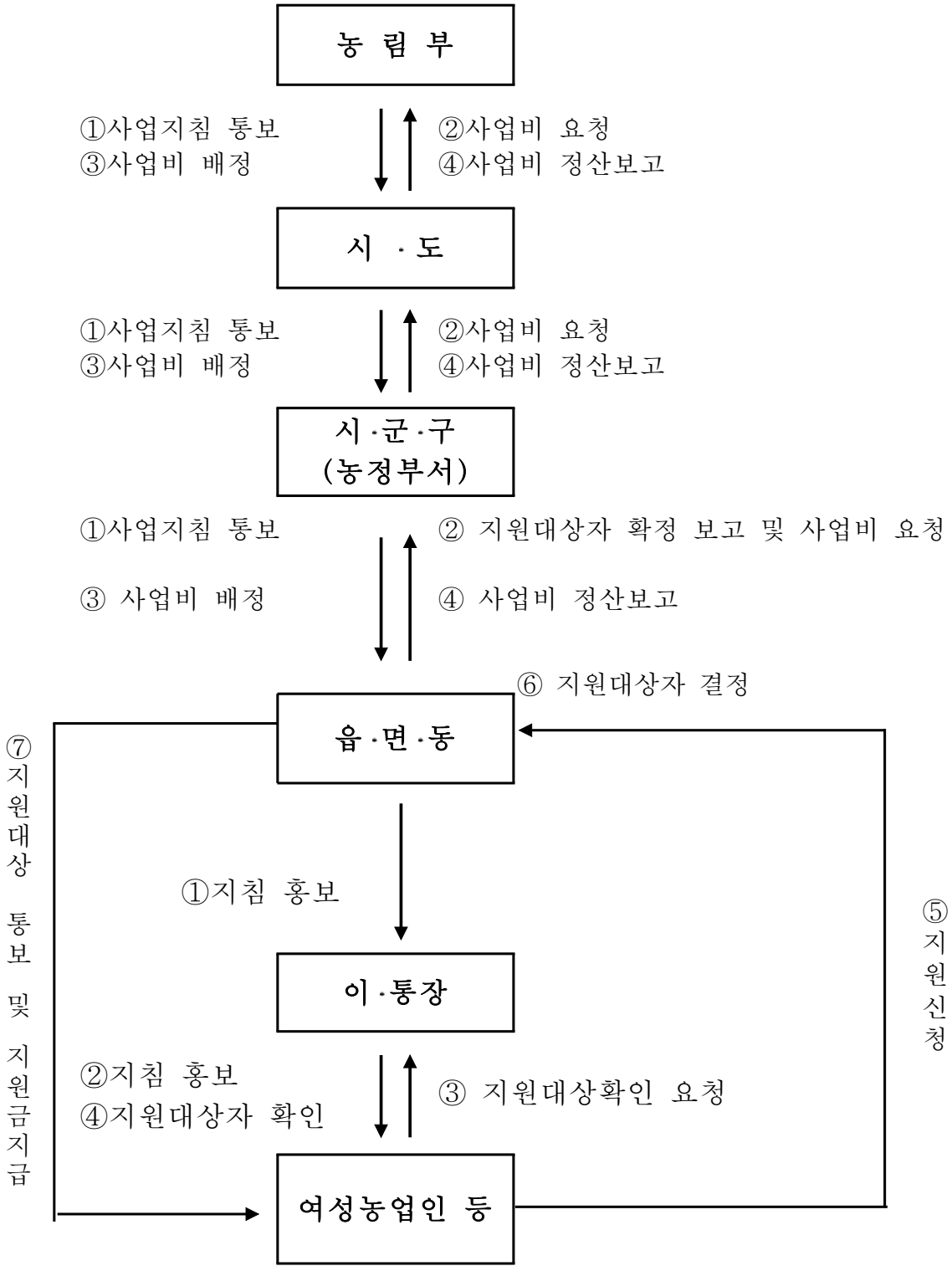
농 림 부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 · 도
①사업지침 통보
③사업비 배정
②사업비 요청
④사업비 정산보고
시·군·구
(농정부서)
①사업지침 통보
③ 사업비 배정
②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 및 사업비 요청
④ 사업비 정산보고
⑥ 지원대상자 결정
읍·면·동
①지침 홍보
이·통장
②지침 홍보
④지원대상자 확인
③ 지원대상확인 요청
여성농업인 등
⑦지원대상 통보 및 지원금지급
⑤지원신청

< 별표 >

업종별 지원대상 기준표

농 업	양 축	임 업	어 업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 해 가 구 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 농 업 농 촌 기 본 법 시 행 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 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 임 업 및 산 촌 진흥촉진에관한 법 률 시 행 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 유 규 모 1,000,000㎡미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자기재사항(농어가단위)	농지소유 면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 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소·말·젖소·사슴 : 마리, 돼지·개 : 마리, 산양·면양 : 마리, 토끼·친칠라·밍크 : 마리, 가금 : 마리, 양봉 : 군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M/T,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ha, 살포·투석 ha,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농지소유 5.0ha이상 등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경우즉시 읍·면·동에 신고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여성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중복지원(저소득층, 양육비) 여부 확인(적합, 부적합)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M/T이하) 척, 양식장 ha		

[별지 제2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국비보조 신청서(/4분기)

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계									
주) 1.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3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집행실적 보고서(/4분기)

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액			당분기 집행액			당분기까지 누계		
	아동수	총집행액	국비	아동수	총집행액	국비	아동수	총집행액	국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계									
주) 1. '총집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기재 2. 아동수는 월별 누계 인원수를 기재(1인에 대하여 12개월 지원했을 경우 12명)									

[별지 제4호 서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정산결과 보고서

시·도별 : (단위 : 명, 원)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아동수	금 액	아동수	금 액	아동수	금 액	아동수	금 액
0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1세	국비								
	지방비								
	소계								
2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3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4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5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6세	국비								
	지방비								
	소계								
합계	국비	-		-		-		-	
	지방비	-		-		-		-	
	합계								

주) 1. 아동수는 월별 누계 인원수를 기재(1인에 대하여 12개월 지원했을 경우 12명)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Ⅲ.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07신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행정사무관 이상목 02-500-1609, 주무관 이윤숙 1607)입니다.

1. 목적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여성가족부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조 체계 유지

○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리 농촌사회에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농촌진흥청, 농업연수원,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기관과 종합적인 업무추진 체계 유지

○ '07년에 3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실시지역, 영농교육, 정보화교육 등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육 등 정착지원이 필요한 자

- 한국어 교육이 요청되나 외부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워 방문교육이 필요한 가정

○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및 자녀 등에 대한 방문교육(소그룹 포함)을 남편 등 가족이 동의하고 희망하는 자

※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구 선정요령「붙임1」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광역시는 '07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남편과 사별하고 실제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

·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

2) '07 주요 지원사업 내용

가)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맞춤형 교육과 상담 지원

○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

-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실시

· 1가정에 대하여 1년에 5개월 동안 1주일에 3회(방문 2회, 소그룹 1회) 한국어 교육 및 소그룹 교육 지원

○ 교육도우미는 지역자원봉사자, 퇴직한 교사·공무원·농협직원 및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봉사경험이 있는 여성 위주로 선발

- 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도 한국정착에 성공하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교육도우미로 선발
- 선발된 교육도우미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수방법, 상담기법 등 기본교육을 마친 후 활동시작

○ 시・군당 10명의 교육도우미가 연간 60가구(상반기 30, 하반기 30)

※ 교육도우미 선발·운영요령「붙임2」

○ 소그룹 교육

- 초기 적응교육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하여는 읍·면 단위의 소그룹 교육 실시(방문교육 지원가구 포함)
- 소그룹 집합교육은 한국어교육, 생활예절, 요리강습 및 전통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월 1~2회)
- 교육도우미는 요리강습, 문화교육 등 효과적인 소그룹 교육을 위하여 시·군 자원봉사단 등과 협조체계 유지

※ 소그룹 교육 실시요령「붙임3」

나)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으로의 통합지원

○ 부부교실

- 생활예절,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으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각 도 별로 실시하고 출신나라별 또는 거주지역별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20부부(40명)씩 연2회 실시(1박2일)

- 교육내용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 및 생활예절 교육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마련

・선진 영농현장 및 문화탐방, 모범가정 사례발표 등

○ 가족캠프

-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문화 교육, 가족공동체 놀이, 문화탐방 및 선진영농현장 견학, 모범가정 사례발표 등

- 각 도별로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구성원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20부부(40명)씩 연1회 실시(1박2일)

○ 모범가정 격려

- 각 도별로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선진 영농현장 견학 실시(연 1회)

・ 선발인원은 모국방문 지원 8부부(도별 1부부), 선진 영농현장 및 문화탐방 16부부(도별 2부부) 선발

※ 모범가정 선발심사 요령「붙임4」

○ 정착 사례집 발간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의 한국 농촌생활 정착 사례집을 한글·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으로 발간·배부

나. 사업규모

1) 실시지역 : 전국 30개 시·군 시범실시

○ 16개 시·도중 농가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 제외

- 각 도의 시범실시 대상 시·군의 선정은 농촌지역의 시·군 중에서 시·군의 참여희망, 사업계획, 여성결혼이민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

* '07년 시범 실시대상 지역 <별표1>

2) '07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교육도우미 운영비	300명	2,156	1,562	594
- 도우미 수당		1,980	1,386	594
- 도우미 교육 등		176	176	
부부교실, 가족캠프 등	8도	268	188	80
교재비, 홍보비	30시군	173	173	
합 계		**2,597**	**1,923**	**67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시달, 예산지원, 관리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기관

- 교육도우미 선발·기본교육 실시, 관련 공무원 교육
-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한국 농촌정착 사례 발간
- 모범가정 격려 행사

○ 도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군 지도·감독, 사업내용홍보, 사업결과 정산 등

- 부부교실·가족캠프 계획 수립·실시, 모범가정 선발

○ 시·군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모범가정 추천, 교육도우미 관리, 사업결과 정산 등

- 교육도우미 모집·추천, 선발된 교육도우미 위촉·지도 및 활동수당 지급
- 소그룹 교육계획 수립(교육도우미의 계획 취합)
- 모범격려 대상 가정 추천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과(전화 02-500-1607,1609, 팩스 02-503-7295)

○ 도, 시・군 : 농정담당 부서

다. 사업시행 절차

1)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가구 조사(농가신청)

- 사업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서는 지원대상 가구선정을 위하여 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조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 방문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가구에서도 직접 시·군,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가구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참조)

- 지원대상 가구는 방문 한국어 초보교육이 필요한 가정 선발
- 선발 순위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하되 직접 방문교육을 신청한 가구를 우선 배려
- 방문대상 가구선정은 교육도우미 1인당 6명(상반기3, 하반기3)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되, 대상인원이 적을 경우 하반기 대상자를 분할 선정
- 지원대상 가구선정 결과는 시·군 → 도 → 관리기관에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어 교육 실시 방법 (붙임2 교육도우미 운영요령 참조)

- 교육도우미는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주3회(방문2, 소그룹1) 한국어 교육을 실시
- 방문교육은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농가형편상 해당가구에서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인근 다른 가구 또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서 2~3명의 소그룹 형식으로 운영
- 당해 가구에 대한 교육시간은 5개월(상반기3~7월, 하반기8~12월)동안 66시간(3시간×22주)을 지원하며, 그중 한국어 교육은 50시간이상 실시하고, 농림부의 한국어 교재 이수
- 한국어 교육 이외의 시간은 소그룹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보충, 생활예

절,요리강습, 정보화교육 등 현지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 교육도우미 활동실적 보고

- 교육도우미는 일일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익월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 교육도우미는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해당가구 지원사업 종료 후(반기별) 시장·군수에게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2)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 대상가구 선정

- 사업실시 지역 시·군에서 부부교실, 가족캠프에 참여할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하며, 대상가구가 없거나 적을 경우 비 사업실시 지역시·군에서 선정가능
- 참여대상 가구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 및 비 방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 실시방법

- 도별로 부부교실 연2회, 가족캠프 연1회 실시하며 민간기관, 교육기관 등에 위탁실시 가능

○ 실시내용

- 다문화 교육, 가족공동체 놀이, 문화탐방 및 선진 영농현장 견학 등

3)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 및 시행절차

○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	세부 추진내용
농림부	○사업총괄 지도・감독 - 관리기관 선정・운영	- 사업시행 지침 시달 - 관리기관 공개선정, 지도・감독
관리기관	○교육도우미 운영관리 - 교육도우미 교육지원	- 교육도우미 선발, 기본교육 실시 - 교육도우미 교육상담 등 교육지원 - 한국어 교재 및 교육재료 제공 - 담당공무원 워크샵 - 모범가정 격려행사(연 1회) -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중간,연말)
도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 사업실시 대상 시・군 선정	- 부부교실 실시(연 2회) - 가족캠프 실시(연 1회) - 모범가정 선발(연 1회) - 시・군 지도감독 - 사업실적(매월) 및 정산 보고
시・군	○교육도우미 운영 - 지원대상 가구 선정	- 교육도우미 모집 - 교육도우미 복무감독(위촉・해촉) -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 지원대상가구 선정 - 모범가정 추천 - 사업실적(매월) 및 정산 보고
교육도우미	○방문 한국어 교육 - 소그룹 교육 및 생활상담	- 대상가구 방문 한국어 교육실시 - 대상가구의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생활상담 실시 - 소그룹 교육계획 수립·실시 (요리강습, 문화예절, 영농교육) - 활동일지 작성·제출(날짜별, 가구별) - 담당지역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파악

○ 사업 시행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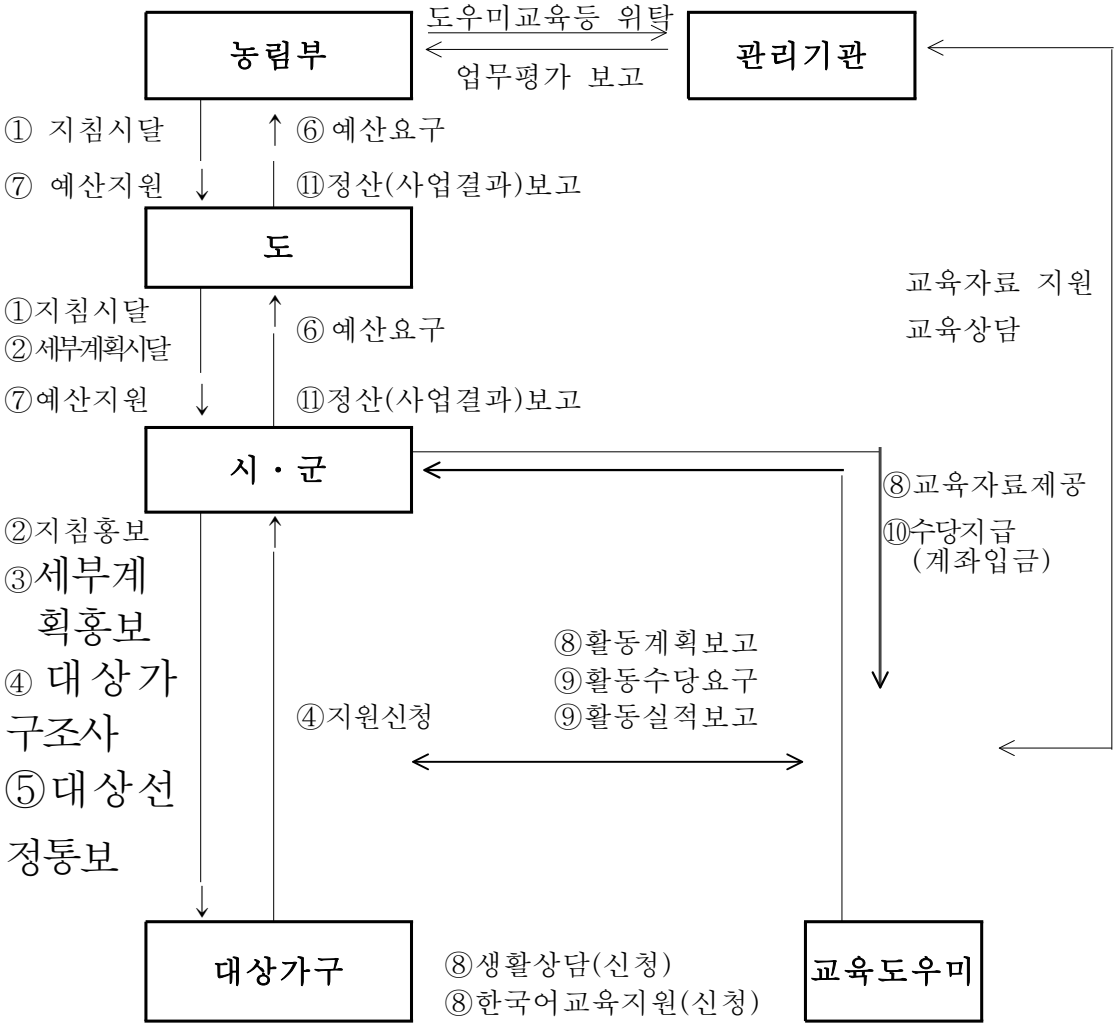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별지 제 23호 서식)

○ 시·군 : 교육도우미 활동인원수에 따라 분기별 도우미 활동 수당 등 사업비를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신청

- 1분기(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도 :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시·군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 전까지 사업비 신청

- 1분기(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 배정

2) 사업비 집행

○ 교육도우미는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교육도우미 일일 활동일지(별지 제12호 서식)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익월 5일까지 제출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가 제출한 수당지급 청구서와 일일 활동일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육도우미 수당 지급

- 시·군 관계자는 당해 도우미의 활동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지급(계좌입금)
- 교육도우미 활동수당은 1일 3가정 방문교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지급하되, 소그룹 교육의 경우는 왕복 교통시간을 포함하여 1일 5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5만원 지급

※ 교육도우미 수당은 「붙임2」 6. 교육도우미 수당지급기준 참조

○ 도지사는 부부교실, 가족캠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지출(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 버스임차료 시중가, 숙박비 1일 5만원, 참석자 여비 1회 10만원, 기타 소요비용 실비 지출

※ 도지사는 부부교실, 가족캠프 사업을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실시 가능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교육도우미의 활동수당 지급 청구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하고, 과실(過失) 정도에 따라 교육도우미 위촉 해제

○ 교육도우미 또는 가구원은 도우미 활동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구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 :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24호 서식)은 익월 1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도지사 :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별지 제24호 서식)은 익월 2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국고잔액 반납 : 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기타 경상 이전수입 (12-59-59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반납금)

「붙임1」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 선정요령

1.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는 시·군별 연 60가구(상반기 30, 하반기 30)을 기준으로 한다.

○ 시·군별 교육도우미 운영인원 10명 기준

* 교육도우미 1인당 연 6가구(상반기 3, 하반기 3) 방문

2. 당해년도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는 연초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정된 지원대상 가구에 변동이 있거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 국제결혼 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원대상 가구를 조정한다.

3. 사업실시 지역 시장·군수는 관내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현지조사표)]에 따라 조사한다.

4. 여성결혼이민자 조사현황을 기초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 선정일람표를 작성하고(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① 한국어 수준이 낮은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 **1단계** : 말하기· 읽기·듣기·쓰기 아주 미흡
- **2단계** : 일상생활에서 인사 등 말하기·듣기 초보수준, 쓰기 미흡
- **3단계** : 일상생활 언어 말하기·듣기 보통수준, 읽기 초보수준
- **4단계** : 말하기·듣기·읽기 보통수준, 쓰기 미흡
- **5단계** : 말하기·듣기 잘함, 읽기·쓰기 보통수준

② 한국어 수준이 같은 정도면 시부모 동거, 자녀있는 가구, 결혼(동거)기간이 오래된 가정 순위로 선정

③ 농가에서 지원대상자 없으면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중 대상자 선정

④ 방문교육 대상가구 선정은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교육이 필요하나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마을이장, 읍·면 직원 등을 통하여 교육을 권유한다.

5.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결과를 도지사→관리기관에 보고(제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6. 지원대상 가구 선정일람표는 신규발생 가구를 보완하여 매년 작성한다.(별지 제2호 서식)

「붙임2」

교육도우미 선발 및 운영요령

1. 교육도우미 모집 및 선발

가. 교육도우미 모집

□ 정기모집

○ 농림부장관은 매년 1월중에 신규사업실시 지역에 대하여 신문, 농림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육도우미 모집을 공고한다.

□ 수시모집

○ 도지사,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 결원 충원을 위해 수시로 공개 모집할 수 있다.

□ 공고기간 : 교육도우미 모집공고는 10일이상 하여야 한다.

나. 교육도우미 응모 및 접수

□ 교육도우미 응모

○ 교육도우미는 우선적으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 6월 이상 이거나 관련교육 2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은 지원 가능

□ 원서접수

○ 교육도우미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도우미 지원서(별지 제4호 서식), 경력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관련 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군에 접수한다.(별지 제6호 서식)

□ 접수결과 제출

○ 시·군에서는 접수완료 후 교육도우미 지원결과를(별지 제6호 서식) 도지사→관리기관에 보고(제출)한다.

다. 교육도우미 선발

□ 선발기관 : 농림부(전문기관에 위탁)

□ 선발시기

○ 신규로 실시되는 지역은 연초(또는 전년말)에 공개모집으로 농림부에서 일괄 선발

○ 기 실시지역에서 도우미 결원보충 등의 보충요인이 있을 경우 기 심사명부를 활용하고, 필요시 시·군 단위로 자체 공개모집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선발요구

□ 선발절차

○ 선발기관은 경력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육도우미를 선발하되 선발위원이 직접 해당 시·군을 방문한다.

○ 면접일정은 선발기관에서 해당 시·군에 면접 예정 3일전까지 통보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면접장소를 제공한다.

□ 선발위원

○ 교육도우미 선발위원은 시·군별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위촉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한다.

□ 선발기준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지원하는데 적격한 사람

- 교육경력, 교육자질, 경력, 봉사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함

* 교육도우미 선발심사표(별지 제7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기준<별표 2>

□ 교육도우미 선발 인원

○ 시·군별로 선발심사 명부 순위에 따라 상위 10명을 선발하되 교육도우미 수요발생시 명부 순위에 따라 도우미로 위촉한다.

*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집계표(별지 제8호 서식)

* 교육도우미 선발심사결과(명부)(별지 제9호 서식)

2. 교육도우미 위촉 및 해촉

가. 교육도우미 위촉

○ 위촉기간

-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는 위촉기간을 연장(서면통보)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위촉한 경우 교육도우미 선발심사명부(별지 제9호 서식)에 교육도우미 고유번호<별표3>, 위촉일자, 담당지역을 기재하고, 서약서 징구<별표4> 및 교육도우미 준수사항<별표5>을 알리고 교부한다.

○ 위촉장 수여

- 시장·군수는 방문교육도우미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로 위촉하고 위촉장<별표6>을 수여한다.

○ 시장·군수는 위촉된 교육도우미에게 「교육도우미증」<별표7>을 교부하여 대상가정을 방문할 때 착용토록 한다.

나. 교육도우미 해촉·사임

(1) 교육도우미 사임

○ 교육도우미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교육도우미 위촉을 사임할 수 있다.

○ 본인이 교육도우미를 사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 1주일전에 사임원<별표8>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가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 후임 교육도우미를 선발하고 관련 공무원과 함께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관련일지 및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한다.

- 수당 정산은 업무 인계·인수 후에 실시한다.(별지 제10호 서식)

(2) 교육도우미 해촉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교육도우미를 해촉할 수 있다.

① 방문교육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 교육내용이 미흡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대상가정(3가정중 2가정이

상)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경우

③ 민·형사 사건에 입건되어 정상적인 도우미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④ 방문교육 대상가정이 없어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⑤ 평가기관(관리기관)에 의하여 교육도우미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⑥ 시장·군수로부터 활동불량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시장·군수는 위 2호 사유로 교육도우미를 해촉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대상농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해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촉 1주일 전에 해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별표9>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해촉하는 경우 후임 교육도우미를 선발하고 관련 공무원과 함께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관련일지 및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한다.(별지 제10호 서식)

- 부득이한 경우 관련 공무원은 관내 다른 교육도우미와 함께 인계·인수한다.

- 기 배부한 「교육도우미증」 회수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를 해촉(사임)한 경우 교육도우미 선발심사명부(별지 제 9호 서식)에 해촉 사실을 기재한다.

3. 교육도우미 방문활동 요령

교육도우미 활동원칙

□ 상반기(3~7월)중 3가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3일 교육 실시(방문 2회, 소그룹 1회)

○ 1일 3가정 방문 5시간이상 활동원칙(1가정 최소 1시간이상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재 50단원 교육 지원

가. 방문활동 방법

○ 교육도우미는 주3일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며, 하루에 3가구를 방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대상가구의 농사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특정한 날짜에 일괄교육 가능

○ 방문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지원대상 가구의 사정이 있을 경우 방문기간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 개별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2~3가정을 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나. 교육실시 방법

○ 한국어교육은 농림부의 한국어교재 활용

○ 교육진도는 1시간에 1단원 학습원칙

○ 교육은 1:1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상가구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대상가정에서 교육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른 대상가정 또는 마을회관 등에서 2~3명의 소그룹으로 교육 가능
- 1일에 3가정 방문이 곤란한 경우 A가정 2시간 B가정 1시간 등 신축적으로 교육 실시

○ 교육도우미 1인당 3가정에 대하여 5개월간 한국어교육 및 생활상담 등 지원

- 다만, 한국어 기초과정 50단원은 대상자의 학습부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반기에 이수 완료

○ 교육도우미는 필요시 교육도우미 2인 1조로 6가정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음.

다. 교육도우미 교육계획서 작성

○ 교육도우미는 반기 시작 전 10일이내에 교육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도우미는 당해 반기(22주)에 대하여 방문 한국어교육, 소그룹 한국어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한국어교육은 반기별 대상가구에 50시간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 소그룹교육 등 교육장소가 필요한 경우 교육도우미는 시·군·읍·면 담당직원 및 유관기관과 농협, 종교단체, 마을회관 등에 교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작성

○ 교육도우미는 방문교육 등 일일 활동일지(별지 제1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육도우미 수당지급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시 첨부

- 시장·군수는 활동일지를 확인한 후 교육도우미 수당 지급하며 필요시 전화 또는 현지 사실여부 확인

○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를 기록·유지하고 해당가구 지원사업 종료후(반기별) 시장·군수에게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일일 활동일지와 가구별 방문 활동일지를 제출받아 사본1부를 교육도우미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관리기관에 제출(일일활동일지 매월, 가구별 활동일지 반기별)

4. 교육도우미 준수사항

[1] 교육도우미는 교육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특히 교육도우미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면 사전에 대상가정과 협의·조정한다.

[2] 교육도우미는 대상가정의 가구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응대한다.

○ 여성이민자 및 가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상담에 친절하게 응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1366센터」를 최대한 활용한다.(6개국어 지원)

[3] 교육도우미는 단정한 복장을 하며, 방문활동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방문교육도우미증」을 목에 걸거나 가슴에 패용한다.

[4] 교육도우미는 담당지역에 신규 발생 등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군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5] 교육도우미는 일일 활동일지, 가구별 지원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정해진 기

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 교육도우미를 사임한 경우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이를 후임 교육도우미(또는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교육도우미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부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청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교육도우미는 정부의 결혼이민자지원 시책을 대상가정에 적극 안내한다.

5. 교육도우미 지도·감독 및 평가

가. 교육도우미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도우미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한다.

- 각 도우미에 대한 지도·감독은 월1회이상 실시한다.

○ 지도·감독은 현장방문, 전화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현장방문·전화확인 등 지도·감독 결과 활동부진 사항이나 대상가구에서 불만사항 토로 등 미흡한 사항 발견시 서면으로 기록·유지한다.(별지 제14호 서식)

○ 활동부진 사항에 따라 도우미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장(경고장)<별표10>을 교부하거나 교육도우미를 해촉할 수 있다.

- 주의장(경고장)을 교부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 3회시 도우미 해촉 가능

나.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도우미 평가

○ 농림부장관은 전문기관을 교육도우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위탁하고 교육도우미에게 방문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육도우미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 상담은 면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관리기관은 수시로 사업실시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도우미의 활동사항을 지도·점검하고,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 관리기관의 현장 방문시 시·군 담당공무원 및 교육도우미는 자료제출 등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현장 방문후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개선·조치토록 한다.

- 위탁기관은 매분기 현장방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년도 종합(중간)평가 보고서를 익년 1월 10일(중간평가는 7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다.(별지 제16호 서식)

6.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기준

○ 시장·군수는 교육도우미로부터 수당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 일일활동일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고, 방문교육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단위 : 원)

활동실적별(1일당)		지급기준액	비고
방문가정 기준	활동시간 기준		
□ 1일 3가정 교육시			
○ 3가정 방문(교육진도 각1단원)	5시간이상	50,000	기본원칙
○ 2가정 그룹(1~2단원) 1가정 방문(1단원)	5시간이상	50,000	
○ 3가정 그룹(각 2단원)	4시간이상	50,000	
□ 1일 1~2가정 교육시			
○ 2가정 방문(각 1단원)	3~4시간	35,000	
○ 2가정 방문 (1가정 2단원, 1가정 1단원)	5시간이상	50,000	
○ 1가정 방문 - 1단원 진도 - 2단원 진도	2~4시간 2~3시간 3~4시간	20,000~35,000 20,000 35,000	1가정 방문시 2단원 까지만 학습

※ 활동시간 : 교육시간 + 이동시간

「붙임3」

소그룹교육 실시요령

1. 소그룹 교육의 목적

○ 방문 한국어교육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 교육생들간의 만남으로 건전한 대화와 교제의 시간 마련하여 우리 농촌사회에의 적응능력 향상 도모

2. 소그룹 교육 계획 수립

○ 교육도우미는 매 반기별로 교육계획 수립시 소그룹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 소그룹 교육은 주3회(월12회)의 방문교육 기간중 월2회 내외의 소그룹 교육계획 작성

○ 소그룹 교육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교육도우미는 필요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소그룹 교육 실시방법

가. 소그룹 교육 대상

○ 소그룹 교육은 해당 도우미의 관할지역 방문대상 가구 및 비 방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소그룹 교육 실시인원은 당해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소그룹 교육은 그 내용에 따라 교육도우미 2~3명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실시 횟수

○ 소그룹교육은 당해 사업시기(반기별 22주 66회)중 한국어교육 50회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16회 범위내에서 실시

다. 소그룹교육 내용

○ 요리강습, 전통예절, 생활예절, 문화교육(노래배우기, VTR시청 등) 육아교육, 정보화 교육, 영농교육, 정부 외국인시책 안내 등

※ 교육도우미는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에게 소그룹 교육 지원을 협의(요청)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

○ 한국어교육

- 방문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방문가구 및 비 방문가구 참석)
- 농사일 등 방문대상 가구의 방문교육 진도가 뒤떨어졌을 경우 또는 추가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 소그룹으로 정규 교육과정 학습(참석대상은 정기 방문가정 원칙)

라. 교육장소

○ 교육도우미는 소그룹교육 장소를 마을회관, 읍·면 복지회관, 지역농협, 공공 사회시설, 종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요청)

4. 소그룹교육 실시결과 제출

○ 교육도우미는 매월 소그룹교육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8호 서식)

「붙임4」

모범가정 선발 심사요령

1. 목적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중 한국 농촌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족을 선발하여 격려함으로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이 한국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사기진작

2. 선발대상 및 인원

□ 선발대상

○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지역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가정

○ 방문가정 또는 비 방문가정을 대상으로 선정

□ 선발인원

○ 사업을 실시하는 도 단위로 선발

- 모국방문 가정 8가정(1가정×1도)
- 선진지 견학 16가정(2가정×8도)

3. 선발시기

○ 선발시기는 효율적인 사업실시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통보

4. 선발절차

□ 모범가정 추천

○ 1차 추천 : 각 읍·면·동장 또는 교육도우미는 모범적인 가정을 시장·군수에게 추천(별지 제19호 서식)

○ 2차 추천 : 시장·군수는 1차 추천 접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모범가정 추천자 명부(별지 제20호 서식),
  추천서 사본(별지 19호 서식)

□ 모범가정 선발

○ 선발기관 : 각 도별로 선발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대상가정 선발

* 심사기준표 <별표11>

- 선발심사위원회는 5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3명이상 포함

□ 선발결과 제출(통보)

○ 도지사는 모범가정 선발결과를 관리기관과 시장·군수에게 제출(통보)

(별지 제21호 서식)

5. 모국방문 지원 및 선진지 견학

□ 주관기관 : 농림부(관리기관)

□ 모국방문 계획서 제출

○ 모국방문 대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서는 1개월 이내에 모국방문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모국방문 지원

○ 지원사항 : 선정된 가족의 부부 및 그 친자녀에 대한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

※ 관리기관은 대상가정의 여권 및 비자 발급 등 출입국 절차 지원

□ 선진지 견학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관리기관은 선진지 견학 대상자로 선정된 모범가정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실시

○ 선진지 견학은 도별 또는 출신국별로 실시

<별표 1>

'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시범 실시지역

도별	시범실시 지역	시·군 수
경기	이천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4
강원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3
충북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3
충남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당진군	4
전북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4
전남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함평군	4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봉화군	4
경남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4
계		30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예산이 조정될 경우 사업실시 지역 조정 예정

<배정기준>

- 농가비율이 낮고 교통 접근성이 좋아 타 기관이용이 가능한 특·광역시는 '07 시범 실시지역에서 제외
- '07년 시범실시 시·군 수 배정은 도별 시·군 개수, 여성결혼이민자수를 기준으로 30개 시·군을 한 도에 3~4개 시·군씩 배정한 후, 해당 도의 사업실시 희망 수요에 따라 도별 사업실시 지역 수(數) 조정

<별표 2>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기준

	평 가 등 급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서류심사(30점)					
○자원봉사경력 (20)	5년이상 (20점)	3~5년미만 (16)	1~3년미만 (12)	1년미만 (8)	없음 (4)
○경력 (10)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3년이상 (10점)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3년미만 (8)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1~2년 (6)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1년미만 (4)	교육 및 농업관련 경력 없음 (2)
2.면접심사(70점)					
○헌신·봉사성 (40)	33~40	25~32	17~24	9~16	1~8
○교육자질 (20+a)	17~20	13~16	9~12	5~8	1~4
○외국어수준 (10)	9~10	7~8	5~6	3~4	1~2

※ 심사위원 평균평점 50점미만은 교육도우미로 선발하지 않음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0점, 6개월~1년 미만 10점, 1~6개월 미만 5점을 교육자질 점수에 가산(a)

<별표 3>

교육도우미 고유번호 부여

□ 고유번호 : 도 번호(1자리) + 시군 번호(2자리) + 도우미 일련번호(2자리)

도 번호		시·군 번호	도우미 일련번호
경기	1	도별로 사업실시 시·군을 법정순으로 번호부여 (01, 02, 03.....)	시군별로 위촉 일련번호 기입 (01, 02, 03.....)
강원	2		
충북	3		
충남	4		
전북	5		
전남	6		
경북	7		
경남	8		

<별표 4>

서 약 서

성명 : (고유번호)

주소 :

본인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로 활동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활동하고, 본인의 고의 또는 잘못으로 방문가정 및 대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고, 해촉 또는 사임할 경우 성실히 인계·인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 . .

서약자 :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준수사항 알림>

※ 교육도우미 준수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본인에게 알림

<별표 5>

교육도우미 준수사항

1 교육도우미는 교육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특히 교육도우미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면 사전에 대상가정과 협의·조정한다.

2 교육도우미는 대상가정의 가구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응대한다.

○ 여성이민자 및 가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상담에 친절하게 응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1366센터」를 최대한 활용한다.(6개국어 지원)

3 교육도우미는 단정한 복장을 하며, 방문활동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방문교육도우미증」을 목에 걸거나 가슴에 착용한다.

4 교육도우미는 담당지역에 신규 발생 등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하여 시·군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5 교육도우미는 일일 활동일지, 가구별 지원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 교육도우미를 사임한 경우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이를 후임 교육도우미(또는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교육도우미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부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청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교육도우미는 정부의 결혼이민자지원 시책을 대상가정에 적극 안내한다.

교육도우미를 해촉 요건

① 방문교육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 교육내용이 미흡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대상가정(3가정중 2가정이상)에서 도우미 교체를 원하는 경우

③ 민·형사 사건에 입건되어 정상적인 도우미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④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⑤ 평가기관에 의하여 연말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⑥ 시장·군수로부터 활동불량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위 사항을 년 월 일 통지받았음 : (서명)

* 위 사항은 교육도우미 위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같은 조건이 되며, 본인 및 시장·군수가 각 각 1부씩 보관

<별표 6>

위 촉 장

성명 : (고유번호)

주소 :

위 사람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도 시·군 교육도우미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담당지역 : 군 면

년 월 일

ㅇ ㅇ 시장/군수

<별표 7>

(앞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증

사진

홍 길 동

(Hong, G. D)

○○도 ○○군

(뒷면)

주소 : ○○군 ○○면 ○○리 ○○번지

(전화번호: 집 , 핸드폰)

성명 : 홍 길 동(고유번호)

생년월일 : 2007. 3. 7

2007. 3. 1

○○○ 시장(군수)

<제작요령>

1. 규격 : 가로 10㎝ 세로 7㎝
2. 색상 : 핑크색 바탕, 검정글씨
3. 사진 : 반명함판(상반신 탈모, 최근 6월이내 촬영한 것)
4. 이름은 한글과 영문약칭 기재
5. 발행기관장에 직인 날인
6. 도우미증 코팅 및 사진 압인

<별표 8>

사 임 원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면,○○면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를 년 월 일자로 사임코자 본 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별표 9>

교육도우미 해촉 통보서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면,○○면

귀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로 정상적인 지원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도우미 위촉을 년 월 일자로 해촉을 통보하니 년 월 일까지 대상자 및 업무관련 서류를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촉사유 :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계할 사항>
1. 교육도우미 일일활동 일지
2.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
3. 지원대상 가구현황 등

<별표 10>

주의장(경고장)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면,○○면

귀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로 활동함에 있어 ○○○○ 하는 등 그 사항이 미흡(부진)하여 주의(경고)를 촉구하니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도우미 해촉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별표 11>

모범가정 선발심사기준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탁월(20)	우수(16)	보통(12)	미흡(8)	아주미흡(4)
1. 본인 및 가족들의 노력정도					
2. 결혼후 출산자녀수	3명이상	2명	1명	없음	
3. 시부모 봉양여부	시부모(2인)	시부모(1인)	기타 가족	없음	
4. 최근 모국방문 시기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이내	
5. 한국어 수준					

* 평가위원 평균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모범가정 선발에서 제외

「별지 제 1호 서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현지 조사표

(　　도　　시·군)

일련번호	주소[1] (전화번호)	남편성명 (나이) / 아내성명 (나이)	출신나라 / 결혼연도[2]	가족현황[3]	한국어 수준[4]	방문교육 희망여부[5]	직업[6] (아내)	영농규모[7]

< 작성요령 >

*** 조사대상은 : 사업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군 지역, 시의 읍·면 지역과 시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 작성순서는 행정구역순으로 작성

1) 주소는 읍·면·리 번지까지 기입하고 전화번호는 집 전화 및 핸드폰 전화번호 기입

2) 결혼(동거)연도는 실제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로 연, 월까지 기입

3) 가족현황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 부, 모, 자녀 0명(친자녀 0명), 동생 등으로 기입

4) 한국어수준은 1~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1~5 기입

- **1단계** : 말하기· 읽기·듣기·쓰기 아주 미흡
- **2단계** : 일상생활에서 인사 등 말하기·듣기 초보수준, 쓰기 미흡
- **3단계** : 일상생활 언어 말하기·듣기 보통수준, 읽기 초보수준
- **4단계** : 말하기·듣기·읽기 보통수준, 쓰기 미흡
- **5단계** : 말하기·듣기 잘함, 읽기·쓰기 보통수준

5) 방문교육 희망여부는 본인 및 가족이 **모두희망**, **일부희망**, **모두반대**로 기입

6) 직업은 남편 직업을 기입하되 아내가 타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에 기입

예)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내가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면 농업(농업)으로 기입

7) 영농규모는 남편 또는 아내가 농사 일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기입하되 종류별로 기입

예) 벼농사 3000평, 소 20마리, 시설채소 1000평, 밭농사 2000평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가구 선정일람표

(　　도　　시·군)

일련번호	주소(면·리) (전화번호)	남편성명 (나이) 아내성명 (나이)	출신나라 (결혼연도)	한국어 수준	남편직업 (아내직업)	영농 규모	선정여부 (선정순위)	지원시기

※ 작성대상 : 사업실시 지역내 모든 조사가정(현지조사표, 서식1호 참조)
작성순서는 행정구역별 및 지원시기('07 상반기, '07 하반기)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구 선정결과 보고서

(　　도　　시·군)

일련번호	주소(면·리) (전화번호)	남편성명 (나이) 아내성명 (나이)	출신나라 (결혼연도)	한국어 수준	남편직업 (아내직업)	영농규모	지원시기

※ 작성대상 : 당해연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선정일람표, 서식9호 참조)
작성순서는 행정구역별 및 지원시기('07 상반기, '07 하반기)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서

		접수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성 명	(한글) (한자)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활 동 시 이용교통	

* 활동시 이용교통은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등 가능한 교통수단 기재

본인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시·군 방문교육도우미로 활동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응모합니다.

2007년 월 일

위 지원자 (서명)

○○군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경력 및 자기소개서 1부.(필수)
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 또는 관련교육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

「별지 제5호 서식」

경력 및 자기소개서

성명: (접수번호:)

□ 주요경력

기 간	학력 및 주요 경력 사항
부터 까지	

※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하되, 고졸, 전문대졸(전공), 대졸(전공) 등으로 기재, 경력은 주요 경력사항 2~3개 기재하되, 자원봉사활동실적 우선 기재

□ 자기소개서

※ 교육도우미로 활동하는데 본인의 활동계획 및 본인의 강점 등 기술

※ 경력 및 자기소개서는 1장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교육도우미 접수결과(접수대장)

(　　도　　시·군)

접수 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 소	주요경력	비고 (전화번호: 집,핸드폰)

* 주소는 시・군, 읍・면・동, 리, 번지까지 기입하고, 주요 경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경력위주로 1～2개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 심사표

(　　도　　시·군)

접수번호	성 명	서류심사(30점)		면접심사(70점)			계
		자원봉사경력(20점)	경력(10점)	헌신·봉사성(40점)	교육자질(20점+a)	외국어수준(10점)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집계표

(　　도　　시·군)

일련번호	성명	심사위원별			계	평균	순위
		①	②	③			

□ 이기 및 집계자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교육도우미 선발심사 결과(명부)

(　　도　　시·군)

순위	성 명 (고유번호)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평균 점수	위촉일 (해촉일)	담당지역	비고 (50점미만 부적격)

※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50점 미만인 사람은 교육도우미로 선발 불가
주소는 실제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기입하되 시군,읍면동,리,번지 기재
- 고유번호, 위촉(해촉)일, 담당지역은 도우미 위촉(해촉)한 후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업무 인계·인수서

□ 인계·인수 사항

○ ( )월분 교육도우미 일일 활동일지

○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부)

□ 지원대상 가구

남편 성명 (아내 성명)	주 소	가족상황	교과진도

□ 기타 특이사항

○

○

년 월 일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입회인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07교육도우미 교육계획서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면,○○면

월	주	교육계획		
		1일차	2일차	3일차
3월	1주			
	2주			
	3주			
	4주			
	5주			
4월	1주			
	2주			
	3주			
	4주			
5월	1주			
	2주			
	3주			
	4주			
	5주			
6월	1주			
	2주			
	3주			
	4주			
7월	1주			
	2주			
	3주			
	4주			

※ 교육계획은 반기별로 편성하며, 방문 한국어교육, 소그룹 한국어교육, 소그룹 기타 교육(요리실습, 예절교육, 정보화교육, 영농교육, 문화교육 등) 세부적으로 기입
- 총 교육횟수 중 한국어교육 50회이상 편성

「별지 제12호 서식」

일일 활동일지(　　년　　기)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면,○○면

활동일			활 동 내 용	피교육자 서명	비고 (수당지급액)
월	일	요일			

* 비고란은 시・군 담당자가 붙임2 수당지급 기준에 의한 날짜별 수당지급액을 기입

<별지 제12호 서식 작성예시>

일일 활동일지('07년 상반기)

도우미 성명	충남도 부여군 홍길동 (40205)	담당지역	홍산면,옥산면

활동일			활 동 내 용	피교육자 서명	비고 (수당지급액)
월	일	요일			
3	7	월	홍길숙 방문 한국어 교육(10:00~11:30, 제1과) 성춘향 방문 한국어 교육(13:00~14:20, 제1과) 김갑순 방문 한국어 교육(15:20~17:00, 제2과)	홍길숙 성춘향 김갑순	
3	9	수	홍길숙, 성춘향 한국어 교육(10:00~12:00, 제2과) 김갑순 한국어 교육(13:00~14:30, 제3과) 김갑순 및 시모 고충상담	홍길숙 김갑순	
3	13	토	소그룹 한국어 교육(10:00~13:30) 참석자 : 홍길숙, 성춘향, 김갑순, 이선미 교육내용 : 1과 복습, 제2과	홍길숙 성춘향 김갑순 이선미	

* 비고란은 시·군 담당자가 붙임2 수당지급 기준에 의한 날짜별 수당지급액을 기입

「별지 제13호 서식」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07년 상반기)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면,○○면

(대상가정: 면 리 :전화번호)

활동일			지 원 내 용
월	일	요일	

※ 작성대상 : 정기 방문교육 대상가구

<별지 13호 서식 작성예시>

가구별 방문 및 지원활동 일지('07년 상반기)

도우미 성명	강원도 홍천군 김갑돌 (20103)	담당지역	홍천읍,남면

(대상가정: 남 면 명동리 홍길동:전화번호 033-200-3000)

활동일			지 원 내 용
월	일	요일	
3	4	화	방문 한국어 교육(10:00~11:30), 1단원학습
3	6	목	소그룹 한국어 교육(13:00~15:00), 마을회관, 2단원학습
3	8	토	소그룹 요리강습(15:00~17:00), 농협 복지회관

※ 작성대상 : 정기 방문교육 대상가구

「별지 제14호 서식」

교육도우미 지도·점검 대장

연월일	미흡한 사항 및 조치계획(결과)	관련 도우미 (고유번호)	담당 공무원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현장 방문·지원실적 보고서

1. 사업명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 관리

2. 현장방문 실적

도 별	사업시군 수	방문시군 수	면담 도우미 수	방문가구 수	비 고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3. 방문내용 및 결과

가. 시군 담당공무원 방문

○

나. 교육도우미 면담

○

다. 대상가정 방문

○

4. 조치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개선요망 사항)

○

○

○

5. 기타사항

*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중간・연말)평가 보고서

1. 사업명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 관리

2. 사업추진 실적

세부 추진사항	추진실적	자체평가

3. 미흡한 점

□

○

–

4. 개선・보완요망 사항

□

○

–

5. 기타 사항

□

○

–

*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년 월분 교육도우미 수당지급 청구서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읍,○○면

□ 교육도우미 활동기간 및 일수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교육활동 실적

(단위 : 시간/회)

대상가정		한국어교육		기타 소그룹 교육 등			
주소	성명	방문	소그룹				
①							
②							
③							
④ 기타 가정	명						
계							

※ ①~③번은 정기방문 가정에 대한 지원실적, ④번은 기타 가정들의 기타 교육실적 기입
기타 소그룹 등은 요리강습, 문화교육, 생활예절, 정보화교육, 영농교육, 생활상담 등

위와 같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교육도우미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o o 군수/시장 귀하

붙임 : 일일활동 일지(별지 제12호 서식)·소그룹 교육실적(별지 18호 서식) 각 1부

「별지 제18호 서식」

소그룹교육 실적보고(년 월)

도우미 성명	○○도 ○○군 ○○○ (고유번호)	담당지역	○○면,○○면

날짜	교육참석자 이름		교 육 내 용
	방문가정	기타가정	

* 교육내용은 강사, 교육시간, 실시내용 등을 요약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모범가정 추천서

<접수번호: >

□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성명		아내의 출신나라	결혼시기 (기간)	가족현황	비고 (최근 모국방문일, 한국어수준)
	남편 (나이)	아내 (나이)				

□ 추천사유

(남편 및 아내의 종사활동, 가족들의 적응·정착 우수사례 중심으로 서술)

□ 추천부문 : 모국방문 지원( ), 선진지 견학( )

□ 추천자(추천기관) : (서명 또는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주소는 시군, 읍면동, 리 번지를 기재

※ 가족현황은 시부, 시모, 자녀 3명(친자녀 2명)으로 기재

※ 한국어수준은 별지 1호서식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모범가정 추천자 명단(모국방문, 선진지견학)

○○도 ○○군

접수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성명		출신나라	결혼시기 (기간)	가족 현황	비고 (최근 모국 방문일, 한국어수준)
		남편 (나이)	아내 (나이)				

* 모국방문, 선진지 견학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장으로 작성, 주소는 읍면동,리, 번지를 기입

「별지 제21호 서식」

모범가정 선발결과

○○ 도

구분	주 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남편성명 (아내성명)	출신나라	평균 점수	비고 (친자녀수)

※ 구분은 **모국방문 지원 1, 선진지 견학 2** 로 기재하며, 모국방문 대상가정과 선진지 견학 대상가정 구분 기재, 주소는 시군, 읍면동, 리, 번지로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모범가정 모국방문 계획서

□ 신청인

주 소 (전화 : 집, 핸드폰)	성 명	
	남편(나이)	아내(나이)

□ 방문계획

○ 방문기간

- 출국희망일(공항기준) : 년 월 일 요일(오전/오후)
- 입국희망일(모국 공항기준) : 년 월 일 요일(오전/오후)

○ 방문나라 및 출입국 이용공항 :

○ 방문가족(부부 및 그 친자녀)

성명	관계	생년월일	여권, 비자 소유여부		비고
			여권	비자	
	남편				
	아내				
	자녀				
	〃				
	〃				

※ 여권이나 비자를 **소지하였을 경우는 ○, 없을 경우 ×**

※ 입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입국일 기재

위와 같이 모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편 성명 : (서명)

아내 성명 : (서명)

(관리기관) 귀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별지 제23호 서식」

농촌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국비보조 신청서(/4분기)

(단위 : 천원)

시·도별 (시·군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총사업비	국비	총사업비	국비	총사업비	국비
도 집행분						
군						
계						
주) 1.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24호 서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실적보고(월)

(도 군)

(단위 : 시간/가구, 천원)

도우미별(시군별)	한국어 교육		기타 소그룹 등					활동도우미수	총 집행액(국비)
	방문	소그룹	요리 강습	생활예절 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기 타	생활 상담		
계									

* 작성요령

- 시・군에서는 교육도우미가 제출하는 수당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며, 도에서는 시・군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보고
- 교육실적은 종류별로 해당 월에 지원한 실제 가구수와 누계시간으로 기재

예) 요리강습을 A가정에 월 5시간(1회 1시간 기준), B가정에 3시간 지원한 경우 [8시간 / 2가구]로 기입

「별지 제25호 서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별 :　　(단위 : 명,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주) 1.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3. 집행(정산)액은 시·군에서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Ⅳ.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행정사무관 이상목 02-500-1609, 주무관 이윤숙 1607)입니다.

- 2007 달라진 내용 -

구분	2006년	2007년	변경사유
○실시지역	-82개 시군	-전국	-시범실시 후 본격적 사업실시
<영농도우미> ○사업량	-4,000명	-8,000명	-전국확대에 따른 지원 인원 증가
○지원대상 -영농규모	-3ha 미만	-5ha 미만	-타 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연령	-65세 미만	-69세 이하	-고령농은퇴직불제와 연계하여 지원연령 확대
○지원단가	-남 39,900원/일 -여 26,600원/일	-35,000원	-사고농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금액 지원방식으로 개선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65세 이상 고령 단독농가 ·18세 이하 손자녀 포함 ·주소지에 주민등록자 ·주민등록상 혼자거주 -65세 미만 가구중 사고로 가사활동이 곤란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65세 이상 농촌 고령가구 ·부부농가 포함 ·18세 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 동거 포함 -좌 동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타기관 지원자 제외)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가구로 지원대상 요건 완화 *거주지 등 실질적 요건에 맞으면 지원
○지원금 지급절차	-자원봉사자 개인통장에 개별입금	-자원봉사자개인통장 또는 봉사단체 임금	-지역농협 건의사항 반영
○실시지역 및 실시방법	-시범지역 전 지역농협 추진계획수립 운영	-희망하는 지역농협 및 농협시군지부 계획에 의거 실시	-농협시군지부 위주의 사업운영 방식으로 개선

1. 목적

○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휴인력을 농촌의 취약농가에 연계하는 도농인력지원체계 구축

○ 사고가 발생한 69세이하 농업인(농지 5ha미만 소유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영농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70%를 국가에서 지원

○ 65세이상 고령취약가구(부부, 조손 포함)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가사인력을 지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지원

○ 영농도우미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사도우미는 농협 전체 시군지부당 1개소 이상의 지역농협이 참여하되 희망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4. '07년 지원계획

구 분		사고농가 영농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가사도우미)	계
사 업 량	대 상	8,000명	15,000명	
사 업 비 (백만원)	계	4,000	1,514	5,514
	국고보조	2,800	1,060	3,860
	지 방 비	-	-	-
	자 부 담	1,200	-	1,200
	농 협	-	454	45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지원대상

○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의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하여 영농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농업인 기준표 : <별표1>

- 사고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전치 2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서 또는 병·의원 입원확인서를 첨부해야함

※ 사고농업인 :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전치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찰과상 등 단순부상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지원액

○ 영농도우미 지원액은 1일 남여임요금 평균단가의 ('05년말 기준 50,000원) 70%인 35,0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자부담

- 영농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하며 총 10일(350,000원)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에 대한 노임지급은 당해 영농도우미의 신청에 의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3) 신청방법 및 이용기간

○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타, 이하같음)에 신청하며, 영농도우미는 신청 후 치료기간 중 이용

* 필요시 진단서 추가 제출

(4) 2007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 고	농가자부담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8,000명	4,000	2,800	1,200

나. 고령취약가구 가사지원(가사도우미)

(1) 지원대상

○ 65세이상 농어촌 고령가구(단독 및 부부가구 포함)

○ 65세이상 가구에서 18세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과 동거 가구

○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단, 타 기관에서 가사지원을 받는 가구 제외)

※ 거주지 및 동거가족 등은 실질적 요건에 맞으면 대상에 포함

(2) 지원내용

○ 자원봉사자 등이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 대상농가의 가사지원 희망내용을 파악, 형평성 있게 선별 지원
(예시) : 세탁, 청소, 이·미용, 목욕, 주거환경정비 등

※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예산 집행기준(별표 2)

(3) 2007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 고	농 협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 지원(가사도우미)	15,000명	1,514	1,060	45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지원, 홍보 및 평가 등

○ 농협중앙회 : 시행계획 및 예산재배정계획 수립 시행, 시·도지역본부 지도감독, 사업내용홍보, 사업결과 정산 등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 :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도 예산재배정계획 수립시행,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사업내용 홍보, 인력자료제공 등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를 동시에 수행

○ 농협 시·군지부 : 가사도우미 추진계획 수립·시행(실시 지역 농협 선정 및 시·군단위 봉사계획 포함), 지역농협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시·도 지역본부에 사업 추진상황 보고, 영농도우미 지원활동 확인 및 노임지원, 가사도우미 지원상황 확인 및 실비지원, 시·군단위 사업 홍보 등

○ 지역농협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여부 확인, 지원활동 확인 및 노임지원
- 가사도우미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가사지원대상 고령취약농가 파악관리, 가사도우미 사업 운영
- 시·군지부에 지원금 지급 요청

※ 자체 가사도우미 사업 운영계획이 없는 지역농협은 농협 시·군지부 운영 계획에 따라 가사지원 실시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과(T 02-500-1607,1609, F 02-503-7295)

○ 농협중앙회 : 농촌지원부(여성지원팀, T 02-2080-5628, F 02-2080-5630)

○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 여성복지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지도경제팀

○ 지역농협 또는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

다. 사업시행 절차

(1) 사고농가 영농인력(영농도우미) 지원

○ 농가신청

- 사고가 발생한 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고발생증빙서(병·의원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영농도우미 선정

- 농협도지역본부로부터 영농도우미 인력자료를 제공 받아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협에서 선정지원

※ 신청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추천 가능

- 다만,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영농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음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는 영농지원 완료후 영농도우미지원금청구서(별첨 4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사고발생여부 등 사실 여부를 이·통장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농가에서 영농도우미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협도지역본부로부터 인력자료를 협조받아 적정한 영농도우미 선정지원
- 영농도우미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군지부에 제출

○ 농협 시·군지부 본부

-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후 지원금 지급

※ 영농도우미 지원금은 영농도우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 결산 및 정산 보고

○ 농협 시·도지역 본부

- 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도우미 희망자 등을 적극 확보하고 D/B화하는 등 인력자료 관리 운영
- 농협중앙회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재배정
- 결산 및 정산보고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 포함

○ 농협중앙회

- 예산 및 자금 재배정(도 별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도 지역본부에 재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결산 및 정산보고

○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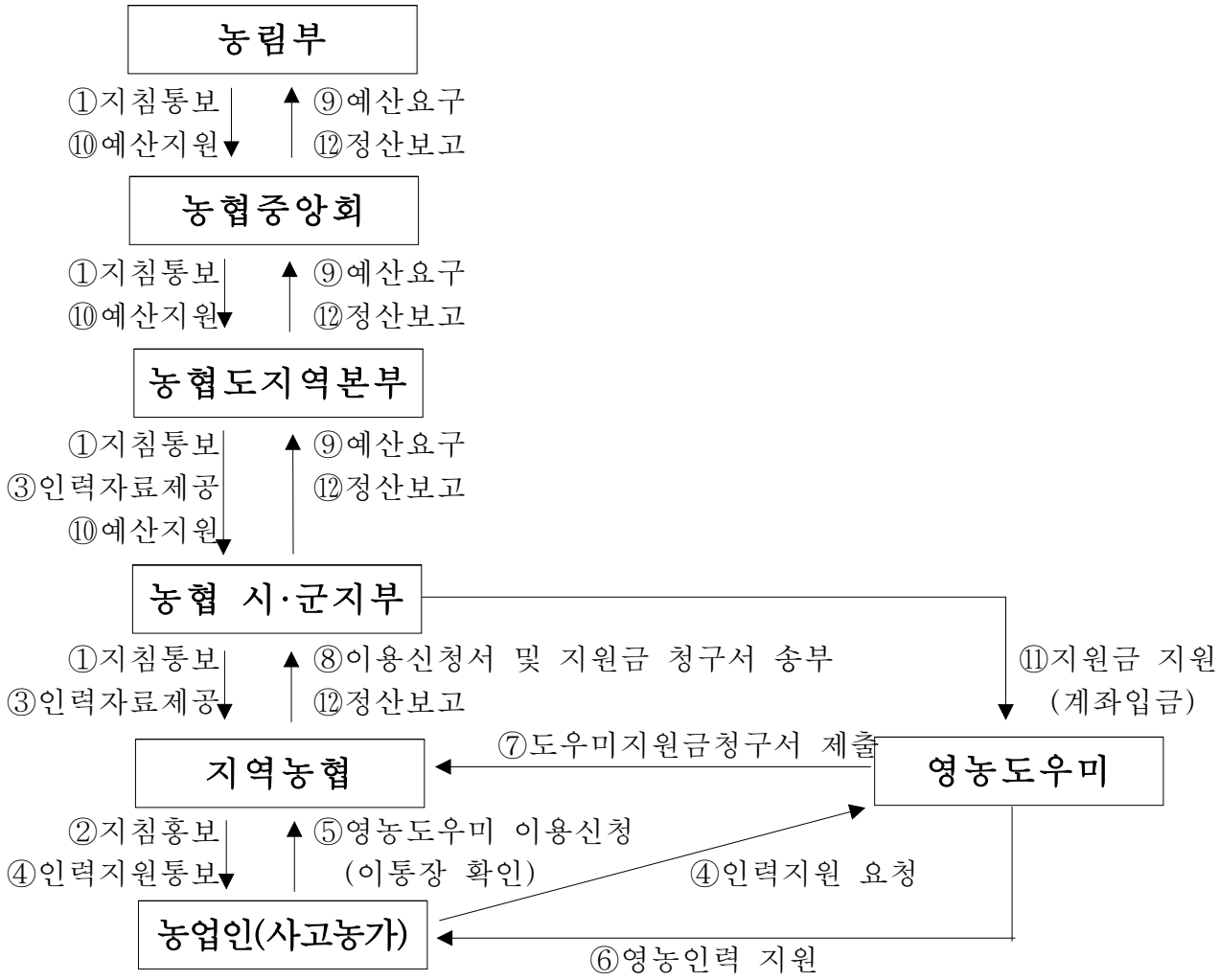

(2)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 가사지원 대상인 고령 취약가구 파악

- 65세 이상 고령가구(단독·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가사도움이 필요한 고령취약가구와 65세 미만 사고농가 중 1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파악하여 올해에 지원할 가사지원 대상가구 선정관리

- 관리대상 가구 명부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 각 고령취약가구가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가사지원내역을 조사하여 예산 및 지원인력을 고려, 균형있게 지원

○ 고령취약가구 가사활동 정기 지원

- 주1회 이상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 가급적 동일한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가구를 지정 방문하여 친근감을 더하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배려

○ 지역농협

- 지원대상가구의 가사지원 희망내역을 조사하여 소요예산과 지원인력 등을 고려, 각 가구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계획 수립

- 농협 시·군지부의 협조를 받아 자원봉사인력 등 고령취약가구에 정기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 지원하고, 가사지원결과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농협 시·군지부에 청구서 제출

○ 농협 시·군지부

- 지역농협의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시·군단위 가사도우미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 운영

※ 가사도우미 운영계획이 없는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계획 포함

-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청구서를 검토후 가사도우미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자의 동의후 단체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체계좌 입금 가능

○ 농협 도지역본부

- 인력지원단 구성 운영을 통해 도우미 희망자 등을 적극 확보하고 D/B화하여 지역농협에 제공
- 농협중앙회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재배정
- 결산 및 정산보고

※ 시 지역본부는 시·군지부 업무를 동시 수행

○ 농협중앙회

- 예산 및 자금재배정(각 도별 지역농협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도지역본부에 재배정)
- 사업추진지도·감독
- 결산 및 정산보고

○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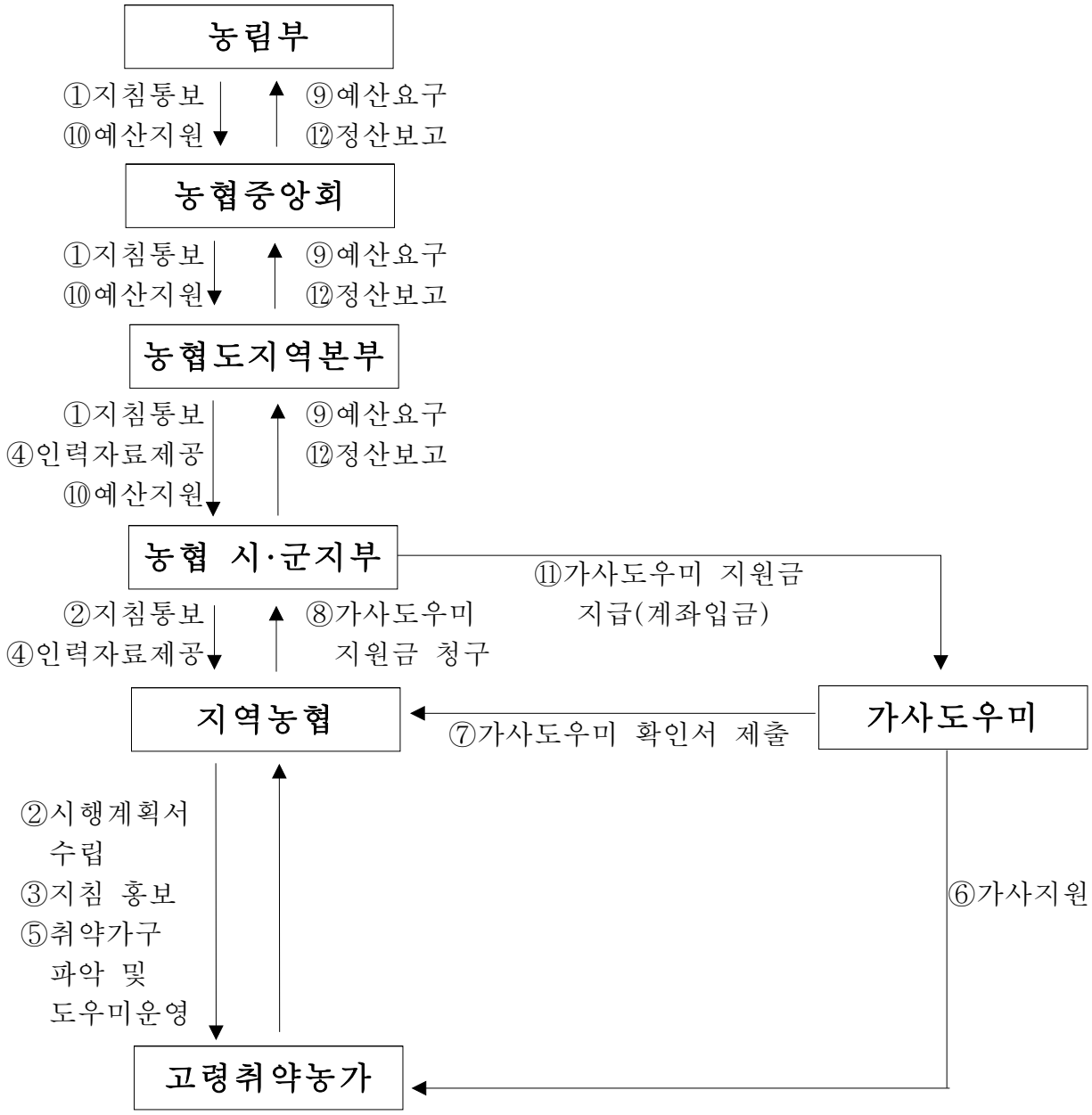

라. 도우미 등록관리

○ 농협 시·도지역본부는 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가사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적극 확보, D/B화하여 지역농협에 제공

○ 지역농협은 고령취약농가 등을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관리하고, 사고농가 및 고령취약가구 등에 대하여 농협 도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우미 파견 지원

- 고령취약가구에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인력 등을 파견 지원
- 농협 시·도지역본부에 영농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사고농가가 직접 추천해서 영농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지역농협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5), 2분기(3.10), 3분기(6.10), 4분기(9.10)

○ 농협 시·군지부 : 지역농협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협 시·도지역본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0),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농협 시·도지역본부 : 지역농협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5),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농협중앙회 : 농협 시·도지역본부의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분기(1.1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 및 자금 배정

(2) 사업비 집행

○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가사도우미는 가사지원결과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

- 영농도우미 지원금 신청시엔 청구서에 해당농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지역농협조합장은 영농도우미가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후 시·군지부에 제출

- 지역농협 관계자는 당해 농가의 영농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등을 통해 확인

○ 가사도우미는 지역농협에 가사지원결과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역농협에서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후 시·군지부에 제출

※ 가사도우미 실비는 10,000원(교통비 5,000, 식비 5,000)을 기준으로 하되, 이동거리 12㎞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비 5,000원 추가지급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은 생활환경개선작업 등의 경우 30,000원 이내, 불가피하게 유급지원자를 활용할 경우 '05년 남여 평균임요금인 50,000원이내 지급 가능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영농도우미이용신청서 및 지원금청구서, 가사도우미 가사지원결과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함.

○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농협 시·군지부는 익년도 2월 15일까지 시·도지역본부에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 농협 시·도지역본부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협중앙회에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 농협중앙회는 익년도 2.28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국고잔액 반납 : 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반납금)

<별표1>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 미만 - 산양,면양:500마리 미만 - 토끼,친칠라, 밍크 : 10,000마리 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규모 1,000,000㎡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경지 48,000㎡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표2>

고령취약가구 가사인력지원 예산집행기준

구 분	집 행 기 준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 연수비 - 자원봉사자 연수에 따른 여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 ○ 자원봉사자 기본교육비 - 자원봉사자 기초지식 및 봉사예절 등 교육에 필요한 여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
유급지원자 수당	○ 보일러설치, 미장, 상하수도 개·보수 등 기술 난이도가 높아 자원봉사자 활용이 어려운 경우 유급지원자에게 지원하는 수당 - '05년 농촌 남여평균임요금 기준 적용 : 50천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 방문기초서비스 : 청소, 빨래, 이·미용, 목욕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 - 실비 지원 기준 단가 : 10,000원/1인, 1일 ○ 생활환경개선 : 보일러·상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 미장, 목공, 도색, 도배, 가옥수리, 전기배선 등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업무 지원 - 실비 지원 기준 단가 : 30,000원/1인, 1일
생일 및 노인 위로행사비	○ 생일, 명절 등의 경로잔치 비용
부대경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 소모품비, 인쇄비, 자료구입비, 회의비,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미한 경비

[별지 제1호 서식]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사고발생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발생일	월 일
	주소				전 화	
	사고내용					
영농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영농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사고발생농업인 성명 : (인)

첨부 : 병·의원진단서(또는 입원확인서)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확 인 란)

이용 영농분야	지역농협담당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사고발생 여부확인	농업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고가 발생한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 사고농업인 :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전치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찰과상 등 단순부상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취약가구 등록대장

(단위 : 원)

연번	취약가구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령 (만)	동거자 (성명,나이)	주소	전화번호	지원분야

※ 본 서식은 지역농협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횡 서식으로 활용

〔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별 취약농가 인력지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	총 사업비	국 비	인원	총 사업비	국 비	인원	총 사업비	국 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계									

주) 1. 인원은 영농도우미의 경우만 기재

2. 총사업비는 국비, 농협부담액, 자부담액을 합한 금액임

〔 별지 제4호 서식 〕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td></tr>
<tr><td rowspan="3">영농작업
주요내용</td><td>기 간</td><td colspan="5">20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td></tr>
<tr><td>사고농가</td><td>성명</td><td></td><td>주소</td><td colspan="2"></td></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도우미 이용 기간 및
지원금 청구액</td><td colspan="5">원【1일 { 35,000원 } × 작업일수 일】
※ 1일 8시간 이내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td></tr>
<tr><td colspan="2">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td><td colspan="5">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td></tr>
</table>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영농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영농도우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사고농업인 성명 : (인)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가 사 지 원 결 과 확 인 서

□ 사업명 : 200 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지원대상(고령취약가구)

○ 성　　명 :

○ 주　　소 :

○ 가구구분 : 고령단독・고령부부・조손・사고농가, 기타(　　)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 활동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활동내용 :

□ 실비 청구액 :　　원(　　일 ×　　원)

□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상기와 같이 고령취약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가사지원봉사자 : 성명　　(인)

(　　)농협조합장(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장) 귀하

※ 가사도우미 실비는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동거리 12㎞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비 5,000원 추가지급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은 생활환경개선 작업 등의 경우 30,000원 이내, 불가피하게 유급지원자를 활용할 경우 '05년 농촌 남여평균임요금 이내 지급 가능

〔 별지 제6호 서식 〕

취약농가인력 지원사업 정산 보고

(단위 : 원)

지역농협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용농가수	금액	이용농가수	금액	이용농가수	금액	이용농가수	금액
영농도우미	국 비								
	자부담								
	소계								
가사도우미	국 비								
	농 협								
	소계								
합계	국 비								
	농 협								
	자부담								
	합계								

주) 1. 이용농가수는 소계란에만 기재

2. 영농도우미 농가수는 수혜받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혜자를 1인으로 계산
   - 1인이 1～10일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1인

3. 가사도우미 농가수는 연인원으로 계산
   - 1주당 1회씩 5농가에 4주동안 가사도우미를 파견한 경우 20인으로 산정

Ⅴ. 기타 협조사항

□ ‘07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산증액에 따른 지방비 확보 협조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06) 정부보육료의 50%
→(’07) 정부보육료의 70%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단가 인상 : (‘06) 정부보육료의 25%
→(’07) 정부보육료의 35%

※ 지역에 따라 양육비 지원시기가 늦어질 경우 민원발생 가능

□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홍보 강화

○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데도 사업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 여성농업인정책 ‘06년 추진실적과 ’07년 시행계획 제출 협조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작성, 제출

○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0일까지 작성, 제출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홍보 및 농협에 주민자료 제공 협조

○ 자치단체 홍보자료,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

○ 관련공무원 교육, 이통장 교육, 농업인 대상 교육시 사업 홍보

○ 농협에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가사도우미 사업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65세 이상 주민자료 요구시 적극적인 협조

* 82개 시군지역 시범실시 후 사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시군농협(지역농협)에서 사업대상자 파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Q&A

1. 공통사항

문1) 2007년도 시행지침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 '07년 지원단가(지원율) 인상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 ('06)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50%→('07) 70%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06)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25%→('07) 35%

○ '07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 반영

※ '06년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전	변경후	증 감
○ 0세 : 350,000원	○ 0세 : 361,000원	○ 11,000원
○ 1세 : 308,000원	○ 1세 : 317,000원	○ 9,000원
○ 2세 : 254,000원	○ 2세 : 262,000원	○ 8,000원
○ 3-5세 : 158,000원	○ 3세 : 180,000원	○ 22,000원
	○ 4~5세 : 162,000원	○ 4,000원

○ 지원대상 지역을 준농어촌지역 까지 확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 취학유예 만 6세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여가부 및 교육부 등 타부처 지원과의 형평성 유지

○ 기타 사업시행상 미비점 보완

- 결혼이민자 특례 신설, 직장보육시설 관련 이중수혜 방지 등

문1) 시행지침에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이라고 명시 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실제 거주지까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을 명시한 이유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지만 변경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지와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문2)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와 관련, 대상농가의 소유농지는 5ha 미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소를 70두 이상 사육하는 등으로 양축, 어업, 임업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 여부?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상의 어느 한 업종이라도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반면, 농지를 4.9ha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소를 69두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각 업종별 기준을 환산하여 합산 금지)

문3)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이 직장인으로서 해당 직장에서 대상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중복지원 금지)

○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대상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이 아닌 직장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문4) 순수 임차농의 경우는 농지원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가?

○ 농지원부는 농업인임을 판단하는 하나의 수단적성격의 공부에 불과한 것이지 농지원부의 유무가 농업인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음

○ 따라서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으면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업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 반대로 농지원부가 있더라도 농지 전체를 임대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문5) 대상아동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으나 행방이 불명하여 조부모 등이 양육하고 있을 경우 지원대상 여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서 손자녀나 조카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경우는 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호적상 부모가 없다는 의미는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로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조부모 등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문6) 도농 복합시의 경우 도시계획상 洞지역이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여건이나 주민 생활형태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과 차이가 없을 경우 농어촌 지역 기준을 확대해석하여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 살고 있는 집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洞지역이나 집 앞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지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할 경우 등

○ 시의 동지역이 외견상 농어촌지역과 흡사하다 할지라도 도시계획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자치단체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이 필요하므로 농어촌 지역기준 적용과 관련한 **확대해석은 불가**

2.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문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도입한 이유는?

○ 당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농어촌지역 아동수당 도입을 의미하게 되어 **도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그 결과 아동수당의 성격은 아니면서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대체 추진키로 관계부처간 협의**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도입

문9) 대상아동의 母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등 여성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父가 농업인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는 사업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 사업명칭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농업인에 대한 아동수당 성격의 지원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 의도이며,

○ 여성농업인에 국한하여 지원할 경우 오히려 양육부담이 더 큰 **부자(父子)가정이 제외**되는 등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남녀 농업인을 불문하고 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실질적인 **농업인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임

○ 따라서 해당 농가에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당해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지원신청**토록하고,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남성농업인이 신청하도록 유도

문10) 통상 '농업인 일손돕기'라 함은 인력(노동력)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 통상 노동력 지원만을 일손돕기의 형태라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형태로 지원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일손돕기**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가정 육아비용을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을 영농활동에 활용토록 하는 것도 일손돕기의 한 형태인 것임

3.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문11) 대상 농가가 저소득층 지원대상에도 해당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 만0-4세아의 경우 >

○ 타부처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비율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단가 기준 **1-2층 100%, 3층 80%, 4층 50%**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 2세 262, 3세 180, 4~5세 162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 : **70%**

⇒ 따라서 대상농가가 **1,2,3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지원**이, **4층**에 해당할 경우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유리

< 만5세아의 경우 >

○ 만5세아의 경우는 저소득층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모두 지원비율이 **100%로 동일**하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인 만큼 가급적 **저소득층 지원으로 유도**

※ 붙임 '07년 시행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정책 참고

문12) '07년 3월 취학대상 아동('00.3.1~'01.2.28 출생아)에 대하여도 '06년도분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 '07년 3월 취학대상 아동이 '06년부터 계속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보육시설 등의 보육실적만 확인하여 '07년 2월분까지만 지급하고,

○ '07년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원신청서를 받아 처리

문13)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대상아동이 도시지역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양육비 및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의 부모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도시지역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더라도 부모중 1인 이상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문15) '05년부터 유아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설 학원에 대하여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준하여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학원에 취원중인 아동에

대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가능 여부?

○ 양육비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 유치원만을 지원대상 시설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설 미술학원 등이 해당 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불가**

문16) 만5세아에 대하여만 지원율을 100%로 한 이유는?

○ 국가의 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정책상 현재 초등학교부터의 **무상교육제도**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소득층,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유아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시 0-4세아에 대하여는 소득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100%, 80%, 50%, 20%)하나, **5세아는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같은 맥락임

<관 련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문17) 만5세아 유치원 취원아에 대한 입학금 지급요령은?

○ 유치원으로 하여금 입학금을 수납한 달(통상 3월)의 교육실적 통보시 '수납액'란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고, 농업인에 대하여는 교육실적 통지서상에 명시된 **입학금 상당액과 당해월분의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문18) 대상아동의 부모가 보육시설 등에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아 보육시설 등에서 보육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보육료 수납액을 0원으로 하여 통보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등의 보육실적 및 보육료 수납사항을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해당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수납액을 0원으로 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월분 영유아 양육비는 지급불가

○ 다만,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육시설 등으로 하여금 보육실적은 통보하되, 수납액을 0원으로 하여 통보토록 유도하고, 향후 그 전의 **미납부 보육료까지 포함하여 일괄납부 하였을 경우**에 **소급하여 지원**

※ 농업인이 1월분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고 2월에 1월분 보육료까지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였을 경우 업무처리 방법(월보육료 30만원)

- 보육시설 등 : 1월분 보육실적 통보시 수납액을 0원으로, 2월분 보육실적 통보시 수납액을 60만원으로 통보하고 ( )내에 1월분 30만원, 2월분 30만원임을 명시
- 행정기관 : 1월분 양육비 지급시는 미지급, 2월분 지급시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원

'07년 각 부처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체계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국공립·사립유치원		
계층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	2자녀이상	장 애 아 무상보육	만 5세아 무상교육	만3~4세아 교육지원	2자녀이상
	법정(1층), 2층	3층	4층	5층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20%이하 (4인, 140만원이하)	도시평균 50%이하 (4인, 176만원)	도시평균 70%이하 (4인, 247만원)	도시평균 100%수준 (4인, 353만원)	도시평균 100%이하 (4인, 353만원)	도시평균 이하 (4인, 353만원)	시설이용 장애아	○ 5 세 아 무상보육과 동일	저 소 득 층(1-4층)	도시평균 이하
대상연령 (지원율)	0~4세아 (100%)	**0~4세아 (80%)**	**0~4세아 (50%)**	0~4세아 (20%)	5세아 (100%)	0~5세아 (50%)	12세이하 (100%)	5세아	3~4세아	3~5세아
정부지원 보육단가	○ 0세 : 361,000원 ○ 1세 : 317,000원 ○ 2세 : 262,000원 ○ 3세 : 180,000원 ○ 4세 : 162,000원	○ 0세 : 288,800원 ○ 1세 : 253,600원 ○ 2세 : 209,600원 ○ 3세 : 144,000원 ○ 4세 : 129,600원	○ 0세 : 180,500원 ○ 1세 : 158,500원 ○ 2세 : 131,000원 ○ 3세 : 90,000원 ○ 4세 : 81,000원	○ 0세 : 72,200원 ○ 1세 : 63,400원 ○ 2세 : 52,400원 ○ 3세 : 36,000원 ○ 4세 : 32,400원	162,000원	○ 0세 : 81천원 ○ 1세 : 158.5천원 ○ 2세 : 131천원 ○ 3세 : 90천원 ○4~5세: 81천원	○중증 -361천원	○국공립 : 53,000원 ○사 립 : 162,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국공립> ○1~2층 (100%) -53,000원 ○ 3 층 (80%) ○ 4 층 (50%) ○ 5 층 (20%) <사 립> ○1~2층 (100%) -162,000원 ○ 3 층 (80%) ○ 4 층 (50%) ○ 5 층 (20%)	<국공립> ○3~5세 :53천원 <사립> ○ 3세 : 90천원 ○4~5세: 81천원
농림부	**○ 지원대상** : 농지소유 5.0ha미만 농어업인의 자녀 78천명 (양육비 32, 일손돕기 46) ※타부처 지원 저소득층 자녀 제외 **○ 지원단가** -**양육비** :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의 **70%**(5세아는 100%) ·0세 253천원, 1세 222, 2세 183, 3세 126, 4세 113, 5세 162 -**일손돕기** :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의 **35%**(5세아는 50%) ·0세 126천원, 1세 111, 2세 92, 3세 63, 4세 57, 5세 81							○지원대상 : 좌 동 ○지원단가 - 국공립 : 3~4세 39천원 5세 56천원 - 사립 : 3세 126천원 4세 113천원 5세 162천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